

의안번호	2203403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C34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실시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6억원~2.6조원, 2029년 16억원~2,374억원 등 5년간 총 243억원~3.7조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의 보청기 급여율(90%)을 준용한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 따라 정해지는 보청기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국고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 유병자의 17.5%가 보청기 신청	176	18	16	18	16	243	49
시나리오 2 : 유병자의 100%가 보청기 신청	26,496	2,734	2,452	2,648	2,374	36,704	7,341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의2 (노인에 대한 특례)	○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1조의2 (노인에 대한 특례)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를 준용하여 공단이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노인”)를 대상으로 보청기를 급여화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를 제시

- 참고로, “급여화”는 특정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동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공단부담금 또는 급여비)하게 됨
 - － 따라서, 보청기 급여화 시 보청기를 구매하는 노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감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¹⁾²⁾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입 시 기준액 131만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급여율 90%)을 급여 적용받고 있음

1)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 추계에서는 노인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현행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자(청각장애인)와 동일하게 90%의 급여율을 적용하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급여 대상자의 범위나 보험급여 범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의 수를 시나리오로 제시
- 추계 첫해에 개정안에 따른 보청기 급여 대상자 전체가 보청기를 구매하고, 차년도부터는 신규로 노인 연령(65세)에 진입하는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보청기 급여 대상자에 대한 가정은 아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에서 제시
 - 현행 보청기 급여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은 5년이므로 추계기간 중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신규 지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내 보청기 급여 개요

구분	개요
급여 대상	□ 청각장애인 1. 편측: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인공중이/인공와우 이식) 급여 이력이 있을 경우 보청기 급여 불가(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의 경우 수술 반대측 세부인정기준 충족 시 급여 가능)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청기 기준액: 131만원(적합관리급여 20만원 포함) - 보청기 고시가격: 51~130만원* * 제조국가 및 모델 등에 따라 상이 -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는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관리를 받은 경우 지급 가능
보청기 내구연한	□ 5년
비고	□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하여야 급여비 지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는 보청기 급여화로 인한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수요 증가 등의 간접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기존에 보청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던 난청 환자가 급여화에 따라 보청기를 신규 구매할 유인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현행 중증도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을 준용한 시나리오(1)와 중증도 난청 환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2)별 추가재정소요를 각각 제시

－ 현시점에 보청기 급여화에 따른 소득탄력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³⁾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중증도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직접적으로 가정하기 보다는 현행 수준(시나리오 1)과 최대 수준(시나리오 2)를 비교·제시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의 증가분임

○ 보청기를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비를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의 총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⁴⁾

○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⁵⁾,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⁶⁾⁷⁾

3) 참고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19~’22년)에 따르면 청각 보조기기 사용률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아 소득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각기기연구회 정연훈 회장은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보청기에 대한 심미적인 거부감이 큰 것 같다’고 해석함(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23.04.07.)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5)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양출제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7) 2021~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보청기 급여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을 우선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고지원금 증가분을 산출함
 -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은 보청기 급여 대상자 수를 추계하고 보청기 급여비를 곱하여 추계

가.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 추계

- (보청기 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망치에 노인 중증도 난청 유병률과 중증도 난청 노인의 보청기 사용률을 각각 곱한 후 기존 급여 대상자인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수 전망치를 차감하여 추계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양측 순음청력검사 후 순음청력평균치가 중증도(41dB이상)인 사람을 보청기 급여 대상자로 분류
 -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전망치에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97.4%)을 곱하여 추계
 - 노인 중증도 난청 유병률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의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인 22.3%를 적용하고, 노인 유병자 중 보청기 사용률은 국민건강통계의 최근 3년 평균인 17.5%와 유병자 전체인 100%를 각각 시나리오로 제시함
 - 각 비율은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보청기 급여의 기 수급자인 65세 이상 청각장애인 수(2023년 기준 343,352명)⁸⁾를 차감하여 추계

8) 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통계 기준 전체 청각장애인의 수에서 의료급여 보청기를 수급한 청각장애인의 수(11,148명)을 차감한 값으로,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청기 급여를 받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 65세 이상 보청기 급여 대상자 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건강보험 적용인구 (A)	10,240,240	10,835,443	11,295,207	11,809,738	12,195,404
중증도 난청 유병자 수 ($B=A \times 22.3\%$)	2,280,160	2,412,692	2,515,066	2,629,635	2,715,510
청각장애인 수 ¹⁾ (C)	385,709	408,127	425,445	444,825	459,352
보청기 급여 대상자 수 ($D=B-C$)	1,894,452	2,004,564	2,089,621	2,184,810	2,256,158
시나리오 1 ($E=(B \times 17.5\%) - C$)	12,559	13,289	13,853	14,484	14,957
시나리오 2 ($E'=(D \times 100\%)$)	1,894,452	2,004,564	2,089,621	2,184,810	2,256,158

주: 1) 의료급여로 보청기를 수급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수를 차감한 수치임

1.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첫해에 보청기 급여 대상자 전수가 급여를 신청하고, 2년차부터는 신규로 65세에 진입하는 급여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

-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보청기를 구매하고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고 급여비 청구를 한다고 가정
 - 보청기 구입비용에는 전기 적합급여⁹⁾가 포함됨

[표 4] 보청기 급여 계획 추계: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나리오 1	신규 보청기 급여	12,559	730	564	631	473
	후기 적합급여	-	12,559	13,289	13,853	14,484
시나리오 2	신규 보청기 급여	1,894,452	110,113	85,057	95,189	71,349
	후기 적합급여	-	1,894,452	2,004,564	2,089,621	2,184,810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9) 보청기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절하는(적합) 작업이 필요하며, 보청기 구매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전기 적합관리, 구매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을 후기 적합관리라고 함

□ (급여비) 보청기 지원 단가와 급여율은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보청기 관련 비용의 90%로 가정

- 공단은 보청기 기준액인 131만원의 90%인 117만 9,000원을 지원하며, 이는 첫째의 보청기 및 초기 적합비용 99.9만원과 이후 4년간 매년 지급하는 후기 적합비용 18만원(연 45,000원)을 포함
 - 보청기 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를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 단가 유지 중

□ 추계결과, 보청기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는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신청 비율(17.5%, 100%)에 따라 2025년 1,255억원~18.9조원, 2029년 112억원~1.7조원 등 5년간 총 1,738억원~26.2조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 사용률을 17.5% (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표 5]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1	구 분 2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 유병자의 17.5%가 보청기 신청	신규	1,255	73	56	63	47	1,494	299
	후기 적합관리	0	57	60	62	65	244	49
	합계	1,255	129	116	125	112	1,738	348
시나리오 2 : 유병자의 100%가 보청기 신청	신규	189,256	11,000	8,497	9,509	7,128	225,390	45,078
	후기 적합관리	0	8,525	9,021	9,403	9,832	36,781	7,356
	합계	189,256	19,525	17,518	18,913	16,959	262,171	52,434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증가분 추계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산출
 -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양출제입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예상 지출 증가분만큼 예상 수입액이 증가하므로,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금이 연동된다고 가정
 - 국고지원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결산 상 실제 수입액의 평균인 14%를 준용
- 추계 결과, 보청기 급여화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신청 비율(17.5%, 100%)에 따라 2025년 176억원~2.6조원, 2029년 16억원~2,374억원 등 5년간 총 243억원~3.7조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의 보청기 급여율(90%)를 준용한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 따라 정해지는 보청기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표 6] 개정안에 따른 국고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 유병자의 17.5%가 보청기 신청	176	18	16	18	16	243	49
시나리오 2 : 유병자의 100%가 보청기 신청	26,496	2,734	2,452	2,648	2,374	36,704	7,341

주: 시나리오 1은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의 보청기 사용률을 17.5%(국민건강통계, 최근 3년 평균)로 가정한 경우이며(청각장애인은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 시나리오 2는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전수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의 보청기 지원 유형 및 단가 등을 준용하여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41dB) 유병자의 일부(17.5%)¹⁰⁾ 또는 전체(100%)에게 보청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질 급여 대상, 범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

10)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65세 이상 중증도 난청 유병자 중 보청기 사용 비율